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57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8년 12월 20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예산정책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그 명칭을 예산정책연구위원회로 조정하고,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며, 그 밖에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적합하지 않거나 맞춤법 등의 오류가 있는 사항 수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수정함.
- 정책위원회와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위원회의 일부 기능을 조정함(안 제2조)
- 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(안 제3조).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해당 없음.
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기타사항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조례 제명을 “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안 제1조 중 “예산정책위원회”를 “예산정책연구위원회”로 한다.

안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예산정책위원회”를 “예산정책연구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분석·평가”를 “재정 분석·평가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시정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”을 “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재정분권에 관한”을 “재정분권에 대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개선을”을 “개선에”로 한다.

안 제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2.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3.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4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예산·재정에 관하여 학식

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안 제4조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한다.

안 제6조 중 “호선하고”를 “호선(互選)하고”로 한다.

안 제7조제1항 중 “원칙으로 하고”를 “원칙으로 하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일전까지”를 “3일 전까지”로 한다.

안 제11조제1항 중 “범위 내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지급범위 산정방법 등은 의장방침으로 따로 정한다”를 “지급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”로 한다.

수정안 조문대비표

원안	수정안
<p><u>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</u></p>	<p><u>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</u></p>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회의원의 예산·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회의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들이 요청하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(이하 “시 교육청”이라 한다)의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 2.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 3. 시정발전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.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관한 연구·분석에 관한 사항 5. 지방재정 관련 법·제도 개선을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서울특별시회의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고 한다)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회의원의 예산·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서울특별시회의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들이 요청하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(이하 “시 교육청”이라 한다)의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 2.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 3.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 4.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·분석에 관한 사항 5. 지방재정 관련 법·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6. 그 밖에 서울특별시회의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고 한다)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<p>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</p>

위촉한다.

1. 의원 15명

2. 예산·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

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정책담당관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, 임시회는 각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2.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

위촉한다.

1.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
2.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
3.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
4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예산·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 정책담당관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각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2.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

때에는 회의개최일 **3일전까지** 회의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**범위 내에서**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위원들의 과제 연구발표 및 정책분석·평가 연구에 따른 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, **지급범위 산정방법 등은 의장방침으로 따로 정한다.**

때에는 회의개최일 **3일 전까지** 회의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11조(수당 등)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**범위에서**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위원들의 과제 연구발표 및 정책분석·평가 연구에 따른 제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, **지급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**

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예산·결산 및 지방재정 등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울특별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들이 요청하는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및 서울특별시 교육청(이하 “시 교육청”이라 한다)의 예산안·결산·기금운용계획안의 분석에 관한 사항
2. 시 및 시 교육청의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
3.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재정 관련 정책대안의 제시에 관한 사항
4. 지방재정 확충 및 재정분권에 대한 연구·분석에 관한 사항
5. 지방재정 관련 법·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6. 그 밖에 서울특별시의회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고 한다)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.

1. 부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
2.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3.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는 의원 각 1명
4.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원 또는 예산·재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

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정책담당관이 된다.

제4조(위원의 임기)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해촉할 수 있다.

제6조(위원장)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의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.

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임시회는 각 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 이 경우 회의는 회기를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.

1.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
2. 의장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-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.
-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제8조(소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-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.
-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④ 소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9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안건의 발굴 및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, 전문가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위원회로부터 출석 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.

-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,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.

제10조(위원회 활동지원)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위원회활동 지원부서를 둔다.

제11조(수당 등)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9조에 따라 참석한 관계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·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」를 준용한다.

- ② 위원들의 과제 연구발표 및 정책분석·평가 연구에 따른 제 수당은 예산의 범

위에서 지급하되, 지급범위와 산정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특례) 이 조례의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30일까지로 한다.